평창군영농기술훈련원설치조례 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 95 제출년월일 : 2015. 9. .

제 출 자:평창군수

1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○ 평창군영농기술훈련원설치조례 설치 근거인 "영농기술훈련규정"이 '96년 3월 2일 폐지됨.

O 농업인에 대한 교육 훈련은 "농촌진흥법" 제19조에 의해 농촌진흥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로 명시되어 있으며 현행 조례는 유명무실 하여 폐지하고자 함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농촌진흥법 시행령 부칙 [1996.3.2 제14952호]
- ① 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 (다른 법령의 폐지) 농업산학협동기금운영관리규정·농촌진홍사업 보조금교부규정·농촌진흥청명예직연구관규정 및 <u>영농기술훈련규정은</u> 이를 <u>각각</u> 폐지한다.

- 농촌진흥법(현행)

제19조(교육훈련사업의 실시)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훈련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.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(2015. 6. 25 ~ 7. 15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2) 부패영향평가 : 기획감사실-6828 (2015. 6. 25) 원안동의

3) 성별영향평가 : 주민생활지원과-37080 (2015. 6. 24) 원안동의

평창군 조례 제 호

평창군영농기술훈련원설치조례 폐지조례안

평창군영농기술훈련원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

- 1. 비용발생 요인 : 비용발생 요인 없음
- 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 제5항 제1호

- 3. 미첨부 사유
 - 유명무실한 평창군영농기술훈련원설치조례 폐지.

4. 작성자

| 작성자 | 평창군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|
|-----|----------------|
| 연락처 | (033) 330-1304 |